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목 차]

- I . 지방자치단체의 ODA 사업 필요성
- Ⅱ. ODA 제도적 기반
- Ⅲ. ODA 추진현황
- Ⅳ. 지방자치단체의 ODA 사업추진방안

지방자치 FOCUS 제87호(2014. 11.)

내용문의 지역발전연구실 연구위원 이소영 02-3488-7328, sy2@krila.re.kr

배포문의 발간 담당자(02-3488-7300)

본 내용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www.krila.re.kr



이소영(지역발전연구실 연구위원)



Ⅰ 지방자치단체의 ODA 사업 필요성

- 국제사회 공여국으로서 한국 ODA의 지속 확대
- 2010년 우리나라는 OECD 개발협력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 가입하여 공적개발원조정책에 있어 국제사회의 공여국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게 됨
 - 2000년 공식적으로 수원국의 명단에서 제외된 이후. 공여국으로서 국격에 적합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후진국 지원 사업을 매년 확대하고 있음
- 박근혜 정부도 140개 국정과제 중에서 'ODA 지속 확대 및 모범적·통합적 개발협력 추진'을 과제로 삼고 있음

※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개념

- ㅇ 국제개발협력(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은 개발원조(Development Assistance)를 비롯한 기타 공적자금, 수출신용, 민간투자 등 다양한 협력방식을 통해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제 · 사회발전을 촉진하는 활동임
 - 국제개발협력 중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임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원조위원회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개념인 개발원조를 공적개발원조(ODA)로 통일하여 사용
- ※ 공적개발원조란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개발을 증진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적거래와 양허적 성격(concessional)으로 이루어지는 자금
 - 중앙 및 지방 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이나 이를 집행하는 기관이 개도국 및 국제기구에 제공한 자금의 흐름(Resource Flows)을 의미

- 국제개발협력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ODA 관심 제고
- 2009년 제정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는 국제개발협력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협력대상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무상 또는 유상의 개발협력과 국제기구를 통하여 제공하는 다자간 개발협력으로 규정하고 있음
 - 즉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도 개도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유·무상의 개발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O 이에 따라 국제협력의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들도 ODA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나 성과는 미흡
 - 한국의 ODA 사업은 기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발협력사업이 시행주체별로 다원화되어 있어 국가 차원에서도 통합적 추진체계가 구축되기 어려운 구조라서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 협력은 더욱 어려운 실정임
- 지방자치단체의 ODA 사업 추진방안 모색 필요
- O ODA 사업은 수원국과의 국제협력 증진이라는 효과뿐만 아니라 공여기관의 지격을 제고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차워의 ODA 사업추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국제개발협력은 국제관계의 일부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국제교류사업과는 차별화되는 사업임
 - 글로벌 차원에서 개발협력을 가이드한 국제적 개발목표를 지향하면서, 국가가 수립한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기조를 유지하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 특성에 알맞은 국제개발협력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2. ODA 제도적 기반

■ 법적 기반

- 2009년 제정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국제개발협력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협력대상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무상 또는 유상의 개발협력(이하 양자 간 개발협력이라 함)과 국제기구를 통하여 제공하는 다자간 개발협력(제2조 1항)으로 규정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구성,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수립, 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의 역할 및 기능 ODA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표 1〉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의 구조

조항	규정	조항	규정
제1조	법률의 목적	제11조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의 수립
제2조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제12조	중점협력대상국의 선정
제3조	기본정신 및 목표	제13조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제4조	기본원칙	제14조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5조	국가 등의 책무	제15조	국민 참여를 위한 홍보 등
제6조	타 법률과의 관계	제16조	전문 인력의 양성
제7조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제17조	국제교류 및 협력의 강화
제8조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수립	제18조	국제개발협력 통계자료
제9조	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	제19조	재외공관의 역할
제10조	국제개발협력주관기관의 역할 및 기능	제20조	권한의 위임 위탁 등

자료: 국제개발협력기본법

■ 기본계획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ODA 통합추진체제를 구축하고 2010년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전략을 수립하였음
 - 지방자치단체의 ODA 사업추진은 상위계획에 해당되는 국가의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전략에 발맞추어 추진해야 함
- ㅇ 3대 전략으로 원조시스템의 효과적 개편. 개발협력 콘텐츠 개발. 국제활동 참여강화를 제시
 - 유·무상 통합 26개 중점 협력국을 선정하여 양자 간 예산의 70% 이상을 집중
 - 유·무상 비율은 40:60으로 유지하고, 비구속성 원조의 비율을 15년까지 75% 수준으로 확대

〈그림 1〉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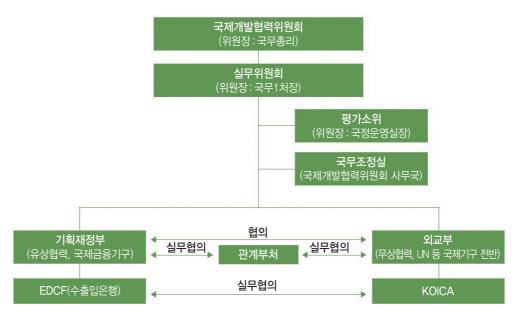
기본정신	수원국에 희망을, 국제사회에 모범을, 국민에게 자긍심을					
추진방향	수원국 개발 수요와 특성 결합 국가 전략 기반한 일관성 있는 추진 두 손으로 드리는 따뜻한 원조					
기본틀	OECD DAC 회원국 / ODA 규모 및 비율 / 유·무상 통합 체계 구축					
	개발협력 콘텐츠 개발	개발경험분야 개발경험정리 정책컨설팅	사업기술분야 경쟁력 기술 프로젝트와 기술협	감동	감성분야 감동사례 발굴, 공유 한국적 미와 정감	
세계 3대화 전략	시스템 효과적 개편	국가전략 부문 지역별 개조 중점협력국, 통합PCS 원조소외국 1개 선정, 접근	사업수행 부문 사업발굴 및 사업호 수원국과 협력 강호		부분 평가 시스템 중심 평가, 환류	
	국제활동 강화	개발경험정리 인력전	구 참여확대 출 확대 국저 조달 시장 참여	l규범 준수	인도적 지원 강화	
국제개발협력 기반 확대	국민적 공감대 확보 NGO, 기업, 대학, 연구 기관들과 상생관계 구축 ODA 전문인력 양성					

출처: ODA Korea(2014)

■ ODA의 추진체계

- 한국의 ODA 추진체계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총괄조정기관, 주관기관, 시행기관의 3단 구조로 구성
- 기획재정부와 외교부는 각각 양자 유상협력과 양자 무상협력 주관기관으로 이들은 각 분야별 5개년 기본계획과 연간 시행계획안을 작성하고 그 이행을 점검
- ODA 사업을 직접 실시하는 기관을 '시행기관'이라고 지칭하는데, 주요 시행기관으로 유상협력사업을 수행하는 한국수출입은행과 무상협력사업을 시행하는 한국국제협력단 (KOICA)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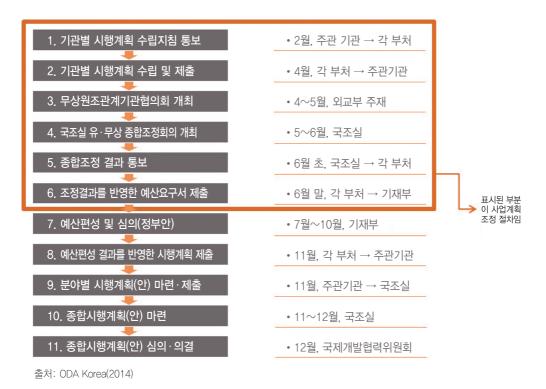
〈그림 2〉 한국 공적개발원조 통합추진체계



출처: ODA Korea(2014)

O 국제개발협력 사업추진 절차는 다음과 같음

〈그림 3〉 국제개발협력 사업추진절차



3. ODA 추진현황

- ODA 사업현황
- O 지난 10년간 평균 양자원조 대 다자원조는 7:3의 비율을 유지
- 양자간 원조는 지난 10년간 평균적으로 무상원조는 62.4%, 유상원조는 37.6% 지원
 - 2012년 유·무상원조의 지원비중은 전체 사업비(10,958억원)중 무상원조가 58%(6,367억원),
 유상원조가 42%(4,591억원)를 차지
- O 무상원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유형은 프로젝트 원조로 2012년의 경우 64,4%를 차지
- 분야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에 대한 지원이 점차 확대되는 방향으로 변화해옴
- 2012년 기준 한국의 양자 ODA 규모(11억 8,317만 달러)에서 26개 중점협력대상국에 대한 지원이 절반 이상인 56.4%를 차지
 - 특히 26개 중점협력대상국 중 베트남, 캄보디아 등 지원규모 기준 상위 10개국에 대한 지원은 79%에 이름
- 사업추진기관별로는 유·무상협력사업의 시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국제협력단의 지원사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한국수출입은행이 2012년 총 사업비의 30.8%(49,228만 달러)를 지원하며 한국국제협력단이27.9%(44,504만 달러)를 지원
- 지방자치단체의 총 지원사업은 전체 159,745만 달러 사업 가운데 0.6%에 해당하는 999만 달러에 불과함
 - 주로 초청연수사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ODA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여 자치단체의 ODA

사업은 사전적으로 계획/집행된 사례보다 사후적으로 ODA 실적으로 계상되는 경우도 있음(KOICA, 2011)

〈표 2〉 ODA 사업 추진기관별 지원현황

(순지출 기준, 백만 불)

구분	2012		구분	2012			
T 正	양자간	다자간	총 ODA	TE	양자간	다자간	총 ODA
경찰청	1,13	_	1.13	방송통신위원회	4,26	1,39	5,65
고용노동부	1.84	12,43	14.27	법무부	0.72	0.18	0.90
공정거래위원회	0.15	_	0.15	보건복지부	9.36	17.07	26,43
관세청	1.86	_	1.86	산림청	4.62	1,61	6.23
(구)교육과학기술부	42.64	3.66	46.30	여성가족부	0.71	4.42	5.13
국가보훈처	0.05	_	0.05	(구)외교통상부	80.41	69.89	150,30
국무조정실	4.42	0.81	5.2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0.17	_	0.17
국민권익위원회	0.04	_	0.04	(구)지식경제부	6.96	1.58	8.55
국방부	0.81	_	0.81	통계청	0.51	0.10	0.60
(구)국토해양부	_	0.10	0.10	특허청	1.13	0.35	1.47
금융위원회	0.02	_	0.02	KDI	5.54	1,78	7.32
기상청	0.59	2.14	2,72	한국수출입은행	487.28	5.00	492,28
기획재정부	30.67	49.46	80.12	한국은행	_	228.03	228,03
(구)농림수산식품부	11.15	8.67	19.82	(구)행정안전부	18,86	_	18,86
농촌진흥청	9.33	0.33	9.66	환경부	0.45	3.68	4.13
마사회	0.11	_	0.11	KIEP	0.44	_	0.44
문화재청	0.30	0.36	0.65	KOICA	444.54	0.50	445.04
문화체육관광부	2.48	0.42	2,90	합계	1,173.54	413,92	1,587.46

자료: EDCF 통계 DB

〈표 3〉 지방자치단체의 ODA 사업예산

(순지출 기준, 백만 불)

78	2012			
구분	양자간	다자간	총 ODA	
서울특별시	1,89	_	1,89	
대구광역시	0,05	_	0,05	
부산광역시	0,20	_	0.20	
울산광역시	0.04	_	0.04	
강원도	0,27	_	0.27	
경기도	0,52	_	0.52	
경기도 교육청	0.18	_	0.18	
경상북도	6,37	_	6.37	
경상남도	0.11	_	0.11	
제주특별자치도	0.00	0,36	0.36	
합계	9.63	0.36	9.99	

자료: EDCF 통계 DB

■ ODA 추진특징 및 과제

- O ODA사업은 국제적 개발협력 패러다임을 따르는 국가대 국가의 관계에서 추진되는 사업임
 - 외교적 관점과 국가 전략적 관점이 내포될 수밖에 없으며,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가이드를 준수해야 함
- O 유·무상 개발협력사업의 분절화 및 통합·조정 기제 미약
 - 한국의 ODA는 유·무상 개발협력사업이 기획재정부·외교부로 이원화되어 있음
 - 또한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도 ODA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이어서 ODA에 대한 책임이
 여러 부처/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효과적인 정책 수립 · 집행에 어려움이 있음

- 특히 수원국의 시각에서는 각 사업별로 협의의 주체가 달라지므로 혼동스러울 수 있으며,
 공여국의 입장에서는 ODA 사업의 유사·중복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음
- O ODA 사업분야 별 전문성 제고 및 효율적 실행을 위한 사후관리 강화
 -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지니고 있지만, ODA에 대한 전문성은 부재한 부처 및 지자체의 ODA사업은 사후적으로 ODA 실적으로 계상되는 경우도 있음
 - ※ ODA 목적이 아닌 단순한 국가 간 협력 등 국제교류의 목적인 사업을 사후적으로 ODA 사업으로 계상하기도 하며, ODA 예산으로 신청하기도 하여 철저한 사전검토를 통해 예산이 승인되어야 함

〈그림 4〉 한국의 ODA 사업추진특징 및 과제

국제개발 협력 패러다임에 따른 국가 대 국가 관계

- 글로벌 ODA 환경 영향
-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지침 준수
- 수원국의 수요 및 입장 고려

유뮤상 개발협력사업 분절화 및 통합조정 미약

- 유무상 원조의 이원화(기재부/외교부)
- 부처 및 지자체 등 분산적 사업추진
- 유사중복투자 및 수원국 혼란 초래

ODA 사업분야별 전문성 제고 및 사후관리 강화

- 부처 및 지자체 ODA 전문성 부재
- 사업발굴·집행·평가 효과적 추진 애로
- 현재 제도하에서는 사후관리 강화

4 지방자치단체의 ODA 사업추진방안

1) 기본방향

- 글로벌 ODA 가이드라인 및 국가 ODA 정책방향 기조유지
- 2015년까지는 MDGs 개발 패러다임과 공조 및 2015년 이후는 Post-2015 개발 어젠다 수용
- O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및 한국형 ODA모델 추진전략의 기조유지
- O 중점협력대상국 및 중점지원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추진
- 한국의 ODA정책의 분절화 경향으로 통합적 추진체계 긴요
- O ODA 사업은 지자체의 일반 국제교류사업 달리 ODA 주관기관과의 연계 추진이 긴요
- KOICA 등 무상원조 주관기관뿐만 아니라 각 부처의 무상원조 담당부서와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 O 지자체 내에서는 주로 국제협력(통상)과가 주과하나, 사업부서와의 연계협력 필요
- 전문기관과의 연계강화를 통한 ODA 전문성 배양
- O ODA 전문가를 활용한 ODA 포럼 등 개최로 ODA에 대한 이해 및 시민적 지지 확보
 - 지방자치단체는 ODA 사업경험이 부족하여 중앙부처 및 ODA 주관기관에 비해 전문성이 부족한 실정임
- O 대학 및 연구소 등 관계기관과 민관협력체계 구축
- O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한 사업추진기반 강화

2) 사업추진방안

(1) ODA 사업 추진기반 확립

- ODA 사업추진 협의체 구성
- 지방자치단체가 ODA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제협력 관련 사업부서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유용할 필요가 있음
- 협의체에서 지방자치단체 ODA 사업의 주요 추진전략 및 사업방향 등을 결정하고 구체적인 사업내용도 협의하여 추진함
 - 사업내용 등에 있어서도 각 사업부서와 관련하여 활용가능한 기관 및 인력풀을 공유
- 특히 ODA 전문가 등의 참여로 일반적인 국제교류업무와는 다른 ODA의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음
- ODA 포럼 개최 등 홍보 강화
- ㅇ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ODA 사업추진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대상은 시민의 지지임
- 시민의 지지를 확보하지 않고서는 지속적인 ODA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우므로, 지역주민이 ODA 사업을 이해하고 공감대를 마련할 수 있는 장 필요
- ODA 포럼 등을 개최하여 시민 및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지역 ODA 사업 추진방향 및 시민참여방안 등을 함께 논의해나갈 필요가 있음
 - 해당지역 출신 해외자원봉사단 등의 활동 후기 나눔 등을 통해 ODA 사업 홍보 및 시민참여 강화

(2) ODA 사업 추진경험 축적

- 해당 지역의 중점사업분야 선정
- 한국형 ODA는 총 159개 ODA 프로그램 중 40개를 기본 프로그램으로 정하여 중점사업분야로 제시하고 있음

〈표 4〉 ODA 기본 프로그램

구분		기본 프로그램
경제 (15개)	경제정책	∘ 경제개발 5개년 계획 ∘ 경제기획 전담기구 설립·운영
	산업에너지	· 산업개발 정책자문 · 전력인프라 구축
	국토개발	∘ 국토종합개발 ∘ 수자원 종합개발 ∘ 산단 개발 ∘ 도시개발 ∘ 신도시 개발 ∘ 국토간선교통망 확충 ∘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
	농어업	• 식량작물 생산성 향상 • 농촌종합개발 • 관개·배수 시스템 개발 관리 • 농업생산기반 구축
	보건복지	∘ 모자보건 사업 ◦ 1차 보건의료체계 강화
사회	교육	· 초등교육 보편화 · 중등교육체계 구축 · 고등교육체계 구축 · 교원역량 강화
(13개)	인적자원	• 기능인력 양성 • 고용지원 • 관리 • 숙련기술 장려·형성 • 국가기술자격 검정
	과학기술	· 과학기술진흥 행정체계 구축 · KIST 설립 · 적정과학기술 지원
거버넌스 (2개)	행정	· 국가정보화 및 전자정부 구축 · 새마을운동 운영
	녹색·환경	◦ 안전한 식수공급 ◦ 하수처리 ∙ 관리체계 구축 ◦ 물환경 보전
미래 · 범분야 (10개)	ICT	・국가기간망 구축 ・정보통신망 고도화 ・ICT 인력양성 ・유・무선 브로드밴드 구축 ・ICT R&D 체계 구축
() (/)	여성	• 모자가정 지원 • 여성 직업훈련

출처: 한국형 ODA 모델 추진전략(2012)

- O 40개 기본프로그램 및 159개 ODA 사업 프로그램 중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경쟁우위에 있는 분야를 중점분야로 선정하여 사업추진
- 다양한 유형의 ODA 사업참여
- O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참여는 주로 연수생 초청사업에 집중되고 있음
 - 한국의 ODA 사업추진체계상 연수생 초청사업 참여가 가장 용이할 뿐만 아니라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임
- o KOICA가 진행하는 글로벌 및 국적별 연수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경험을 축적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지역의 중점대상사업뿐만 아니라 수원국의 수요에도 적극적으로 응대하여 공모사업 등에 참여하여 ODA 사업경험 축적
 - 공모사업에 적시에 대응하기 위하여 상시적 기반 구축 필요
 - 연수가능기관 DB 구축 및 KOICA 씨앗 프로그램 매뉴얼 숙지. 연수 코디네이터 양성 등
- 시민사회단체협력프로그램 등의 민관협력사업 또한 개별단체가 공모 지원하여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단체와 연계하여 해당 사업 공모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지역내 시민사회단체와의 상시적 네트워킹을 통해 해당 시민사회단체가 ODA 사업에 참여할수 있도록 지원
 - ODA 사업에 대한 이해 도모, 해당 지역에 적합한 ODA 사업 발굴 등을 위해 ODA 협의체 및
 포럼 등에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 O 아카데미협력프로그램 참여를 위해서는 관내 고등교육기관과의 연계협력이 중요
 - 아카데미협력프로그램은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이 주도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주체가 되지만, 이들의 경험과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연계

- 2015년 이후 아카데미협력프로그램 사업체계가 변화할 예정이므로 사전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 유도
- O 해외봉사단 파견을 위한 홍보 및 시민 지지층 확보
 - 해외봉사단 참여는 개별 봉사자들의 개별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의 참여는 불가능함
 - 해당 지역 시민들에게 관련 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ODA 사업에 대한 관심을 유도
 - ODA 포럼 등에서 해외봉사단 활동단원의 후기 나눔 및 지자체 자원봉사단과의 연계로 해외봉사단 사후관리체계에 기여

(3) 국가의 ODA 사업추진 지원체제 확립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
- O 지방자치단체 ODA 사업 추진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는 과제는 지방자치단체 ODA 사업 참여를 위한 국가적 시스템 마련임
-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국제개발협력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협력대상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유무상의 개발협력 및 다자간 개발협력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국제개발협력 사업추진의 국가 및 자치단체 시책 규정 등 지자체 역할 항목을 구체화하여적시할 필요가 있음

■ 유·무상원조기관과 연계 강화

- 지방자치단체가 ODA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법상의 주관기관인 유무상 원조기관을 통하여서만 가능함
- 연수사업 등 공모과정을 통한 참여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사업발굴이 가능할 수 있도록 수요조사 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유무상 원조기관과의 네트워킹 강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자산을 활용하여 ODA 사업 콘텐츠를 발굴할 수 있도록 연계강화
- 지자체 ODA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ODA 사업을 발굴하고 실질적으로 ODA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O 안전행정부의 국제행정발전지원센터가 일부 이 기능을 수행하여 성과를 낸 바가 있었으나, 현재는 안전행정부의 공적개발원조사업에 집중하고 있음
 - ※ 국제행정발전지원센터는 개도국을 상대로 행정 분야 공적개발원조(ODA)와 새마을사업 전수, 행정 시스템 수출 지원 등을 위해 설립
- 부처뿐만 아니라 유무상 원조기관 내에도 지자체를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참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 공동 워크숍 및 설명회 개최 등 홍보 강화
- ㅇ 공적개발원조 관련 지자체 공동 워크숍을 개최하여 자치단체의 ODA 사업추진 사례 및 경험 공유
- O 지자체 공무원 및 시민의 ODA 사업이해 도모를 위한 설명회 개최 등 홍보 강화
 - 정부, 학계, NGO, 기업 등이 함께하는 포럼/워크숍/세미나 등 활성화
- 초·중·고, 대학, 일반 국민 등 대상별로 맞춤형 홍보 시행
 - 교과서 및 권장 도서에 ODA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돕는 내용 추가

참고문헌

- 국무조정실 ODA Korea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odakorea.go.kr)
- 국무조정실(2012), 한국형 ODA 모델 추진전략
-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10),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제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전, 제7-1호, 2010,10,25
-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14), 2014 대한민국 ODA 백서
- 이소영 · 김현호(2014), 대구지역 공적개발원조 사업추진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이소영(2014). 지방자치단체의 ODA 사업추진방안, 한국지역개발학회 춘계학술대회
- 한국국제협력단(2011), 한국 무상 ODA의 파트너십 제고 방안 연구 정부 · 공공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최근 간행물 2013

통권 469	지방 3.0 실현을 위한 추진체계와 전략 연구
통권 470	정부간 인사교류의 활성화 방안
통권 471	지방의회 의정활동 역량강화 방안
통권 472	지방자치단체 외부 인적자원 활용 방안
통권 473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 자율성 강화 방안
통권 474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민과 정부의 역할
통권 475	새마을운동을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
통권 476	읍면동의 근린자치기능 강화방안
통권 477	중앙-지방 간 협력체계 강화방안
통권 478	지방자치단체의 유비쿼터스형 주민안전망 구축방안
통권 479	지방자치단체의 산림재해 주민안전망 구축 방안
통권 480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안전(4대악) 역할 및 대응시스템 구축방안
통권 481	지방재정관리체계 개선방안—자치단체 재정분석 및 재정공시제도 중심으로—
통권 482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개선방안
통권 483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 강화 방안
통권 484	보통교부세 재정형평화기능 강화방안
통권 485	사회복지 국고보조금의 개선방안 : 차등보조율을 중심으로
통권 486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개선방안
통권 487	외국인 밀집지역의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방안
통권 488	지방분권형 특화산업 육성방안
통권 489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불균형 해소방안
통권 490	생활안전형 보행환경정책 개선방안
통권 491	지역확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육성방안

통권 458	지방자치단체 조직운영시스템의 다양화 방안
통권 459	지방자치단체 외부인재풀의 구성과 활용 방안
통권 460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이주민정책 개선방안
통권 461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제도의 다양화 방안
통권 462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자본 측정 및 증진방안
통권 463	중앙-지방간 사회복지 재정부담 조정방안
통권 464	지방투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방투융자심사제도 발전방안
통권 465	고령화 · 저성장시대의 지역발전 투자전략
통권 466	지역쇠퇴분석 및 재생방안
통권 467	지역공동체 주도의 발전전략 연구
연구총서 (통권 468)	새로운 지방예산제도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적 거버넌스 재설계 방안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공급 다원화 전략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역량 강화 전략
지방자치 선진화를 위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
창조적 지역발전 전략
지역주도의 일자리 창출전략
지방세제의 선진화 -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

